

學術講演會

放火火災의 對應方向에 關한 考察*

崔鍾太**

I. 序論

요사이 사회구조를 都市化, 產業社會化라고 한다. 도시에서는 인구의 사회이동이 높아, 문화적 가치와 규범은 서로 갈등적이며, 농촌사회에서처럼 일차적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산업화사회는 분업을 전제로 하여 사람들의 일이 서로 전문화됨에 따라 서로의 가치 규범이 상이하여 결국 개인간의 갈등을 야기하기 쉬운 사회구조를 뜻한다.

따라서 산업화는 분업으로 인해 농촌사회에서 볼 수 있는 친구와 이웃이 경제적 동료이자 지역 사회의一員인 인간관계를 分節시켜 1次的 社會關係의 약화 내지 사회적 결속을 와해시킨다고 한다.¹⁾

또한 都市化, 產業社會化는 都市地域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인구밀도가 높아진다. 우리나라의 시·읍 지역을 포함해서 都市人口는 1960년대 9,444천명으로 37.8%였던 것이 1970년도에는 15,810천명으로(50.2%), 인구의 절반이상이 都市에 집중되었다. 1980년에는 26,891천명으로 71.8%, 그리고 1988년은 34,558천명으로 82.3%가 都市地域안에 살고 있다고 한다.²⁾ 따라서 都市地域은 주거환경, 보건·사회, 교육, 교통, 공공안전 등 여러분야에서 소위 都市問題가 발생하게 된다.

* 本稿는 1990. 9. 24. 科總 2 脣 會議室에서 本 學會의 第 14回 學術講演會에서 發表한 것임.

** 正會員, 內務部 消防局 防護課長

1) Shaw와 Mckay등 시카고 학파의 犯罪學者들이 주장하는 「사회조직의 와해」(Social disorganization)이론

2) 金安濟, 都市化的 주제와 생활환경, 지방행정, 1990. 7, p.22.

이런 都市問題 가운데 公共安全을 害하는 문제는 市民의 安全生活을 저해하는 직접적 要因이다. 사람은 누구나 Maslow의 欲求段階理論에서처럼 生活의 安全을 바라는 欲求가 강하다. 그러므로 個人은 스스로 自己의 安全을 확보하기 위하여 自衛的 방어를 하거나 國家 公權力으로부터 安全生活을 保障받으려 한다.

火災는一般的으로 사람의 意思에 反하여 發生하거나 사람의 의사에 따라 發生하여, 人命과 재산의 被害를 加하는 것으로 人員과 消火裝備를 動員하여 鎮火할 必要가 있는 狀態로 鎮火하지 않을 경우 公共의 安全을 크게 위태롭게 한다.
(*)

火災中에도 特히 放火는 犯罪의 類型 가운데 強力犯의 범주로 취급될 정도로 그 결과적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放火火災는 每年 發生이 增加하고 있으며, 이것은 거의 國제적인 추세로 매우 우려되는 바라 할 수 있다.

放火火災의 증가는 바로 고도의 都市化, 產業社會化的 病理的 犯罪 현상으로서 「個人의 目的과 目的을 達成하는데 制度化된 手段間의 괴리에서 생기는 갈등이 社會的 逸脫로 表出된다」는 Merton의 逸脫原因論이나, Tard의 犯罪模倣理論으로 原因은 說明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放火火災의豫防을 為한 研究活動이 未洽한 점이 放火火災豫防에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論文은 放火의 動機나 傾向 및 對策面에서 먼저 理論的 背景을 살펴보고, 이 이론과 關聯지

(*) 火災의 定義(內務部, 火災로 인한 被害算定基準 第2條)

어 放火의 實態를 考察하여 向後 對應方案 研究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目的을 둔다.

그러므로 放火犯의 性格이나 心理狀態 등의 心理學的 接近이나 個個 事件別 事例研究는 더 많은 時間과 資料를 가지고 研究가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概括的인 理論과 實際를 中心으로 考察한다.

이 論文에서 理論的 背景으로 삼고 있는 몇몇 犯罪理論은 放火犯罪를 설명하는데 반드시 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이 一般的으로 主要한 犯罪理論으로 活用되고 있기 때문에 그 理論을 引用하였다.

II. 放火犯罪의 理論的 考察

1. 理論의 準據

이 考察을 為하여 먼저 어떤 理論을 背景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그 準據를 定하고자 한다.

放火犯罪는 다른 刑事犯罪와 달라서 犯行動機面에서 社會心理學的, 經濟的, 生理的 또는 社會環境的 影響 등 多樣한 動機를 前提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와같은 여러분야의 理論을 모두 準據로 삼기에는 限界가 있다. 그러므로 역서는 「逸脫의 社會的」³⁾에서 逸脫原因論으로 설명하고 있는同心圓理論, Anomie理論, 社會統制/制止論을 放火의 原因을 說明하는 이론의 준거로 삼고자 한다.

2. 放火犯罪의 理論的 背景

(1) 同心圓 理論

Ernest Burgess(1925)는 “한 도시의 발전형태는 都市의 特성활동이 特징공간지대에 몰려있게 되는同心圓類型(Pattern of Concentric Circles)을 띤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都市空間을 제1지대를 中心地帶(Central Zone)로, 제2지대를 轉移地帶(Transitional Zone)로, 제3지대를 노동자(Blue Collar)들의 거주 지역으로, 제4지대를 주거지역(Residential Zone)으로, 그리고 제5지대를 통근자 거주지역(Com-

3) Allen E. Liska, Perspective on Deviance, 1986.

muter's Residential Area)으로 나누고 있다.

제1지대인 중심지역은 상업과 공업지역이며, 제2지대는 공업과 상업지역으로 飲食되어가는 과정에 있으나 빈민층 등 주로 영세민 거주지역이 포함되고, 제3지대는 한 주택에 2~3세대의 빈민 층이 거주하며, 제4지대인 주거지대는 중산층이상의 사람이 거주하는 단일가구주택지역이다. 그리고 상류층이 생활하는 통근자 거주지역은 제5지대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Burgess는 都市中心街에서 멀어질수록 地價가 높아진다고 하면서 犯罪는 中心地일수록 發生率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Burgess의 研究에 뒤어서 시카고犯罪學派들은 地帶類型에서의 文化發展과 기능에 관심두고 특정 민족이나 인종들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사회나 비관습적(unconventional)인 지역사회연구를 시도한 바 있다.⁴⁾

이 연구는 ① 비관습적인 사회질서에 대한 설명, ② 비관습적 사회질서를 형성하는 생태학적 조건과 과정(競爭)에 대한 설명, ③ 사회질서를 규제하는 문화에 대한 설명이 주제였다. 또한 시카고학파 학자들은 물리적 공간내의 비행유형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그들의 연구결과와 비행, 정신질환 및 자살은 주로 都市에서 일어났으며 특히 전이지대(주거와 업무활동이 겹치는 제2지대)에서 發生率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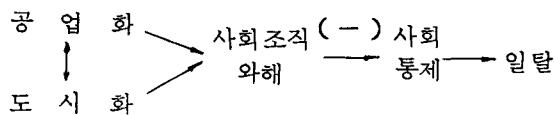
또한 그들은 전통적인 사회통제과정(농촌사회의 1次的 關係)을 崩壞시키는 생태학적 조건이 제2지대에서 특히 존재하며 사회통제과정이 약화될 때 逸脫行動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이 주장하는 사회조직의 와해(Social Disorganization) 이론은 都市環境이 어떻게 逸脫行動을 야기하는가를 설명하는데 시카고학파 학자들이 주장하는 사회조직화해이론의 인과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다.

4) Franklin E. Frazier(1932)는 美國 南部농촌지역의 노예상태에서 발달한 미국흑인문화가 어떻게 흑인들의 공간적 분포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研究

Louis Wirth(1928)는 유럽인 빈민지역에서 발달한 유태인 문화가 시카고 빈민지역(Slums)의 생태학적 조건에 어떻게 적응하는가를 연구

사회조직 와해이론의 인과구조 (*)



위의 그림은 대체로 공업화와 도시화가 사회조직 와해를 증가시키며, 사회조직 와해는 관습적인 사회통제를 감소시키고, 逸脱行動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조직 와해론에 입각한 사회정책으로는 都市地域社會를 재조직함으로서 사회통제력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Clifford R. Shaw는 지역사회조직 프로젝트(Community organization projects)를 시작했는데 그 유형은 ① 학교, 위생시설, 교통시설 등 전반적인 지역사회 개선을 위한 Project ②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위락시설 Project의 개선 ③ 비행청소년선도계획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Project들의 성과는 무엇이며, 지역내에 일탈행동을 어느 정도 감소시켰는가에 대해서는 Project에 대한 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미지수이다.

이와 같은同心圓理論에 입각한 “사회조직의 와해”이론은 현재의 미국에서는 잘 적용되지 못하고 다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적용이 可能하다는 적용도의 한계가 있으며(Clinard), 한편으로 이 이론은 농촌출신 중류계층에 대한 편견(Middle-Class Rural Bias)으로 사회조직 와해를 추상적으로 概念化했다(Matza와 Mills)는 비판을 받고 있다.⁵⁾

그렇다면 동심원이론에 바탕을 둔 사회조직와해 이론이 都市犯罪 특히 放火犯罪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Anomie理論

Anomie는 사회학적 개념으로 無規範狀態 (normlessness)를 말하는 것으로 인간이 성공목표

에 대한 강력한 충동만 의식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는 方法의 合法, 非合法性 여부는 전혀 의식할 수 없게 되는 즉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목표를 추구하려 하는 심리를 가리켜 일반적으로 아노미라고 하고 이러한 아노미의 심리상태가 일반화되고 있을 때 그 사회를 아노미사회(anomic society)라고 한다.⁶⁾

○ Durkheim의 아노미

Anomie理論은 원래 불란서 사회학자 Emile Durkheim의 社會的 非規制이론에서 출발한다. Durkheim은 社會的 非規制의 근원을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이기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아노미라고 그의 자살론(Suicide)에서 주장하였다. 즉, Durkheim은 자살하는 사람은 그가 속하는 사회와의 비규제상태(기혼자보다 미혼자가 더 비규제상태에 있다)에 있을 때 사회적 책임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에 사회적 규제를 받는 기혼자보다 미혼자 층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급격한 사회변동이 자살의 원인이라고 하고 이것을 Anomie적 자살이라 하였다.(*)

○ Robert K. Merton(1938)의 逸脱理論

Merton은 현대사회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 Durkheim의 自殺論을 規範 위반에 대한 一般體系理論으로 發展시킨 사람으로 그의 이론은 1950년대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理論으로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Merton에 의하면 사람의 목적과 수단간의 괴리(endsmeans discrepancy)는 사회질서와 관련이 있다고 하고 사람들은 원래 높은 열망을 가지며 목표와 수단은 학습을 통하여 배우게 된다고 한다.

그는 사회문화 구조를 구성하는 두 개의 기본요소를 文化的으로 규정된 「목표」와 「제도적 규범」으로 문화적 목표는 사람들의 성공목표를 말하며, 제도적 규범은 성공목표에 도달하는 합법적 수단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 그림에서 화살표는 인과적 영향의 방향
(-)표는 부정적 영향

5) 이상의 이론은 Allen E. Liska의 “Perspective on Deviance”를 張相姬 外 2人이 공역하여 經文社가 펴낸 (1986) “逸脱의 사회학” pp.89~125에서 인용한 것임.

6) 犯罪學 槍 형사정책, 慎鑑撰, 法文社, 1989 중보판, p. 291.

(*) Herny와 Short는 Durkheim과 같이 불경기와 호경기는 좌절의 주요근원이 된다고 하고, 불경기동안에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좌절을 많이 한다고 했다.

조화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文化的 目標는 성공목표만 강조하고 목표에 도달하는 合法的 수단은 도외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合法의 手段이 성공목표 달성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同一하게 許容되어 있지도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 불균형이 심할 경우 규범위반을 유발하는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즉, 제도적으로 합법화된 수단으로는 자기의 성공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서든 그 성공목표에 도달해야 한다는 壓力 또는 다른 특이한 이상행동을 하도록 하는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사람들이 받는 성공목표에 대한 그러한 壓力を 바로 규범위반으로 표출되는데 이러한 규범위반에서 自身들의 安慰를 구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아노미적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Merton은 이러한 아노미 현상에서 사람들이 이 아노미에 적용하는 생활방식을 5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것은 同調(conformity), 革新(innovation), 儀禮主義(ritualism), 故北主義(retreatism) 및 叛逆(rebellion) 등이라고 한다.

앞에서 말하는 5가지 적용方式을 설명하면

① 동조형의 사람

동조형은 목표-수단간의 괴리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유형은 목표-수단간의 괴리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참으면서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의 적용방식이다.

② 혁신형

혁신형은 Merton의 관심을 집중하는 유형의 사람들로 이들은 관습적 또는 합법적 수단으로 성공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규범 위반을 통하여 성공하려 한다.

③ 儀禮主義型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실현 가능한 성공목표만을 세워으로서(사람에게는 원래 높은 열망이 있지만) 그로 인하여 좌절과 스트레스를 줄여나가는 유형의 사람들로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④ 패배주의형

이들은 목표와 수단 모두를 否定하므로서 스트레스에 적용하려는 유형으로 이들은 주로 정신질환, 약물중독 및 알콜중독을 들 수 있다. 이들을 2종 실패자라고 한다.

⑤ 반역형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文化的 목표와 합법적 수단을 모두 거부하므로서 스트레스에 적용하는 方式이다. 그러나 패배주의와는 달리 반역형의 사람들은 스스로 새로운 목표와 수단을 창설하여 사회 변혁을 꾀한다.

위에서 설명한 5가지 적용방식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Merton의 스트레스 적용방식 *

목적(Ends)	수단(means)	해석(적용)方法
⊕	⊕	동조형
⊕	⊖	혁신형
↔	⊕	의례주의
⊖	⊖	패배주의
⊕	⊖	반역형

이상에서 살펴본 Durkheim과 Merton의 아노미 이론을 社會政策面에서 考察하면 Durkheim은 사회적 비규제가 규범을 야기한다 하므로 이에 대한 사회정책적 시사는 사회의 통합과 규제를 증가시키는 일이나 이는 미국사회의 재구조화를 암시하는 것으로 별로 실행 가능성성이 없다.

또한 Merton의 理論에 對한 社會政策的 시사는 사람들의 逸脫率이 文化와 사회구조간의 통합수준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탈률을 감소시키기 為해서는 문화와 사회구조간의 통합수준을 증가시키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자원과 기회를 재분배하는 몇 가지 정책이 미국에서 실행되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잘알려진 것이 1960년대 Richard Cloward 가 조직하고 보건교육후생성(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의 국민정신건강 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Mental Health)와 New York School of Social Work 및 Ford 재단의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진 청소년 운동프로그램

(*) (+)는 관습적 목적이나 합법화된 수단을 고수한다는 뜻이며 (-)는 위반한다는 뜻으로 범죄와 관련하여 문제 되는 유형은 혁신형과 패배주의와 반역형의 3가지 유형이다.

(Mobilization for Youth Program) 있지만 그效果는 두드러진 것이 없다.

이와 같은 Durkheim이나 Merton의 일탈이론은 몇가지 논쟁의 여지는 있다. Durkheim의 자살이론에 대해서 Pope(1976)는 사회적 비규제와 자살 간에 이론적 관련성이 애매하다고 비판하고 Cohen(1965) 등은 Merton의 이론에 대해 ① Merton의 이론은 상류층에 대한 규범위반을 설명하지 못하고 ② Merton의 스트레스 적응유형(5가지 方法)이 각각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를 명확히 설명을 못하며 ③ Merton의 사람에 대한 심리적 가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개인들이 사회적 환경내에서 각자의 정상적인 수준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즉, 사람들은 자신과 남들파를 비교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웃이나 가까이 접촉하는 사람들이 모두 비슷한 수준의 목적과 수단이라면 그것은 인간심리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데 Merton은 이런 개인차에서 오는 인간의 심리적 가정이 잘못되어있다는 것이다.⁷⁾

그렇다면 이런 이론들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放火犯罪를 설명하는데 어떤 적합성이 있는지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사회통제 이론

사회통제이론은 규범위반을 일탈연구의 주제로 삼고 왜 어떤 사람은 규범을 위반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규범을 위반 하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앞에서 고찰한 아노미 이론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구조적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 스트레스는 규범을 위반하도록 동기화시키거나 규범위반을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시카고학파의 범죄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소수집단의 部分文化(범죄집단등)에 참여하므로서 규범위반에 대한 동기를 배우게 되고 또는 범죄 행동에 대한 태도나 가치를 배움으로서 범죄자나 일탈자로 된다고 가정한다.

이런 가정들에 비하여 사회통제이론에서는 사람들이 규범을 위반하게 되는 것은 규범위반이 일반

적으로 매력적이고 흥미롭고 이로운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규범을 위반하게 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일탈 동기여부는 강조하지 않고, 왜 소수에 사람만이 일탈동기에 따라 행동하고 규범을 위반하는가를 설명하려 한다. 그러므로 사회통제론자들은 사람들이 규범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데 관심을 둔다.

사회통제론자들은 사람들이 규범을 위반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内的 통제요소(규범을 위반함에서 오는 스스로 느끼는 죄의식, 자책감 같은 것)와 外的 통제요소(규범위반으로서 받게 되는 사회적 처벌과 사회적 보상의 상실)이다.

이러한 사회통제론에는 Sykes와 Matza(1959)등이 강조하는 内的 통제이론과 Hirschi(1969)가 강조하는 内的 및 外的 統制理論 그리고 外的 통제이론을 강조하는 이론(그 통제기능이 가족 및 학교와 같은 사회적 통제에 의한 것과 정부의 통제에 초점을 둔 이론)이 있는데 外的 및 内的 결속을 강조하는 이론을 사회 결속이론, 内的 통제를 강조하는 이론을 중화이론이라고 하고 外의 통제를 강조하는 이론을 제지이론이라 한다.

○ Travis Hirschi(1969)의 사회결속이론(Social Bond Theory)

Hirschi는 사람들과 관습적 사회간의 결속에 관심을 두고 규범위반을 사람들이 관습적 사회와의 결속 부족에 기인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는 결속요인으로 信念(belief), 집착(attachment), 전념(commitment), 關與(invovement)의 4가지를 들었다.

이 4가지 요소를 설명하면 ① 信念은 사람들에게 관습적 규범이 내면화된 상태를 말하고 ② 전념은 규범 준수에 대한 사회적 보상에 갖는 사람들의 관심도를 말하고 ③ 執着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민감한 정도를 말한다. 그리고 ④ 관여는 사람들이 관습적 활동에 시간을 보내는 정도를 뜻한다. 이 4가지 요소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결속시키는 요소들로서 신념은 내적통제를 집착, 전념 및 관여는 外의 통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7) 이상에서 설명한 아노미 이론은 신진규, 전계서 pp.28 9~293 및 장상희外 2人 공역, 전계서 pp.42~84에서 인용한 것임.

○ Sykes(1957)와 Matza(1964)의 中和理論 (Neutralization Theory)

Sykes와 Matza는 사회통제이론을 상황적으로 정립하고, 규범위반은 여러가지 정당화에 의하여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한다. 즉 위법 행동도 술에 취한 취중의 행동으로 또는 자기방어, 정신이상, 범죄의식의 결핍등의 이유로 법적으로 정당화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규범위반자들은 자기들의 위반 행동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도록 정당화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위반자들은 위반을 타당한 것으로 여기는 정당화로, 심리적으로 이런 정당화는 사람들에게 내면화된 도덕적 규칙들을 중화시키는 기능을 하게된다. 그리하여 규범위반자들은 죄책감이나 수치심없이 사회적 규범이나 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Sykes와 Matza는 이것을 정당화법 즉 중화기술 (techniques of neutralization)이라 한다. 그것들을 ① 책임부정(denial of responsibility) ② 가해부정 (denial of injury) ③ 피해자에 대한 부정(denial of victim) ④ 비난자에 대한 비난(condemnation of the condemners), ⑤ 고도의 충성심에의 호소 (appeal to high loyalty) 등 5가지로 들고 있다.

즉 책임부정은 일탈자들이 일탈행동을 하게된 것은 자기들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상황때문이라고 정당화 한다.(가정환경, 빈곤등) 가해부정은 일탈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준것이 아니라고(예를 들어 기물파괴는 장난으로, 자동차 도둑은 빌려 간것으로) 정당화 한다. 피해자에 대한 부정은 피해자를 피해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피해자의 존재를 부정한다.(예를들면, 학교내의 기물파괴는 불공정한 교사에 대한 보복으로 자기들의 일탈행동을 정당화하는 따위) 또한 비난자를 비난하는 것은 남들의 잘못이나 사회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심리적 기법으로 남들도 그런 위반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도 비난 받을 수 없다는 식의 정당화이다. 또한 일탈행동은 자기가 소속된 집단에 대한 충성심에서 행한 행동으로 자기책임을 부정하고 정당화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일탈은 자기정당화 방법을 학습하면서 생기며 학습된 정당화는 내적 통제로서 내면화된 관습적 태도와 가치를 중화시킨다는 것이다.

○ 制止理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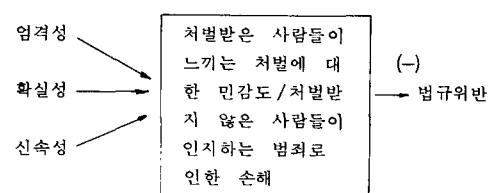
制止理論은 사회통제론의 특수한 경우로서 사람들은 모두 규범을 위반하도록 동기화되어 있지만 사회통제로 인하여 규범을 위반하지 못한다고 가정한 이론이다. 이것은 사람의 内的統制를 無視하고 國家에 의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이론은 범죄로 인하여 위반자가 받는 손해가 크면 클수록 범죄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제지 과정은 일반적은 과정과 특수적인 과정이 있다. 전자는 범법자에 대한 처벌이 일반 대중에게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알게하므로서 일반사람들의 규범위반을 감소시킨다는 일반 예방적인 과정이다. 후자는 처벌을 하므로서 처벌된 사람들의 법규위반행동을 장래에 한하여 감소시킨다는 과정을 말한다.

특수적 측면의 제지과정은 처벌의 엄격성, 확실성, 신속성의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한다.

엄격성은 징역이나 벌금등의 정도가 강한 처벌의 가혹성 또는 強度를 말하고 확실성은 처벌의 가능성을, 신속성은 즉각적인 처벌을 뜻한다.⁸⁾

제지이론의 인과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자료: 장상희외 2人, 전개서, p.140.)

III. 放火火災의 實態 分析

제2장에서는 放火犯罪가 主로 都市地域에서 높게 發生하는 점으로 미루어 都市동심원이론과 犯罪行爲나 規範等에 대한 逸脫行爲가 個人的의 높은 온망과 制度化된 手段間의 괴리에서 생기는 스트레스의 결과라고 하는 Anomie理論 그리고 사람들의 규범위반을 統制하는 社會的統制理論을 放火犯罪의 理論的根據로 考察하였다.

8) 사회통제이론은 이론 소개에 그치고 이론에 대한 사회정책적 활용이나 비판은 생략한다.

이 章에서는 앞에서 考察한 諸理論들이 放火犯罪를 說明하는데 어떤 關聯이 있는지를 考察하고 効率의 放火火災의豫防對策을 모색하려 한다.

1. 放火의 動機

가. 放火動機의 一般的 類型

放火에는 一般的으로 감정적 충족(emotional gratification)이나 경제적이득(economic gain) 또는 어떤 정신적 결합에 의한 動機가 주된 범주를 형성한다. 放火의 일반적인 動機로는 Vandalism, 원한關係(Spite), 금전상의 이익(Profit), 범죄은닉(Crime concealment), terroism, 그리고 방화광(pyromania)등에⁹⁾ 의한 放火 그리고 폭력적 테러리즘(Violence/Terrorism)에의 한 放火가 있다.⁹⁾

(1) Vandalism

Vandalism에 依한 放火는 가장 發生率이 높은 傍花類型에 의한다. 이는 주로 비행 청소년이 저지르는 犯罪로 文明社會에 대한 파괴 행위라 볼 수 있다. 청소년 Vandalism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①은 불을 놓아 개인적인 만족감을 취하는 個人的인 문제 청소년의 放火行爲이고 ②는 集團化된 청소년이 소속집단에 대한 충성심의 表現 또는 다른 그룹원에게 세력의 과시를 목적으로 集團의 으로 배회하면서 放火하는 類型이 있다.

個人的으로 行動하는 청소년 Vandalism은 학교 건물이나 기타 어떤 의미가 있는 건물이나 목표물에 放火를 한다. 그러나 集團的 放火는 불량 청소년이 集團的으로 移動하면서 어떤 動機나 集團結束의 수단으로 목격자가 있는데서 放火를 하므로서 오히려 고무되고 放火의 對象도 區分이 없다.

이러한 청소년 또는 청소년집단에 依한 放火行動은 美國의 경우 전체 放火事件中 35%~50%에 달한다.

(2) 보복, 원한(Revenge or Spite)에 의한 動機

여기서 해당하는 放火는 일반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원한을 품고 보복하려는 동기에서 생명 신체

9) The Arson Epidemic, D.L. Rosen Bauer NFPA Book one, fire science Series, 1981, NFPA No spp-61. p. 8

및 정신적 손상과 금전상의 손해를 가하기 위하여 放火를 하게 된다. 대인관계에서 원한이나 보복대상은 남녀관계(애인, 부부),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 세입자와 가주 등 다양하다.

(3) 放火狂(pyromania)

방화광은 정신불안정 상태에 있는 자로 보통 방화의 동기는 불에서 심리상의 만족이나 관능적인 쾌감 같은 따위를 취하기 때문에 放火를 한다.

방화광은 거의 언제나 화재 현장에서 사건의 진행과정을 바라봄으로서 성적 만족감을 느낀다.

(4) 금전상의 이익사취 動機

금전상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放火는 그 증거 확보가 매우 어렵지만 지역사회에 경제적 손실을 크게 끼친다. 미국의 경우 이 범주에 속하는 放火에는 개량을 요하는 가옥을 소유한 소유자가 가옥 수리에 필요한 비용 충당방법으로 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하여 그리고 차가인이 가옥을 다시 꾸며주기를 바라는 동기에서 放火를 한다.

그리고 임대공간이 적은 건물의 건물주가 세금, 보험금, 건물유지비 등을 경감받기 위하여, 또는 더 많은 임대공간은 늘려서 재건축할 수 있는 자금을 사취하기 위하여 放火를 저지른다고 한다. 건물 이외에 자동차도 방화대상으로 삼는다.

(5) 범죄은닉 放火

다른 범죄를 범하고 그 범죄를 은닉하기 위하여 放火하는 유형이 여기에 속한다. 다른 범죄에는 횡령, 사기, 위조, 탈세, 재고품, 착복 등의 범죄와 살인 및 사채유기 등 여러 가지의 범죄 유형이 포함된다.

(6) 폭력, 테러리즘에 의한 動機

폭력 또는 테러리즘을 動機로 放火하는 行爲는 一·種의 Vandalism의 動機로 보였으나 그 行爲者가 青少年이 아닌 政治的 集團等 特定 目的을 가진 團體 및 組織에 依하여 放火하는 것으로 青少年 集團의 Vandalism과는 다르다.

이는 주로 정치적 반대자나 정부당국을 난처하게 하거나 위협하려는 의도에서 行하는 政治的 動機에 依한 放火가 있다.

나. 放火動機의 傾向

(1) 美國의 경향

美國의 人口 5萬以上 都市에 대한 LEAA(Law Enforcement Assistance Administration)의 研究에 依하면 都市放火 事件中 Vandalism이 42%, 원한에 依한 放火가 23%, 방화광 14%, 보험금사취등 경제적 목적 放火가 14%, 범죄행위 은닉 7% 등으로 청소년에 依해 放火가 되는 Vandalism이 가장 높게 發生한다는 것이다.¹⁰⁾

또한 뉴욕시티의 성인 對 청소년 放火動機別 구성비는 성인의 경우 보복(47%), 방화광(30%), Vandalism 10%, 범죄은닉 9%, 보험금사취 4%인데 비하여 청소년의 경우 성인에 비하여 보복 5%, 방화광 14%, Vandalism 80%, 범죄은닉 2%로 성인과 청소년의 방화동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表1〉 美國 뉴욕시티의 成人·青少年放火動機構成比(83年)

Motive	(単位: %)	
	Adults	Juveniles
Revenge	47	5
Pyomania	30	14
Malicious mischief(vandalism)	10	80
Crime concealment	9	2
Insurance fraud	4	0
Total	100	100

Source : Fire Prevention, No 173(84.10), p.4

(2) 日本의 경향

日本의 放火 主要動機는 自殺, 정신이상, 분풀이, 주택, 가정불화, 사회적 불안등인데 動機別 경향으로는 소화 36년에서 소화 60년간의 경시청에서 취급한 2,512名의 放火被害者別 放火動機는 表2와 같다. 放火의 動機中 가장 높은것이 울분이다.

울분 808件, 원한에 의한 동기가 411件, 愉快 291件, 精神病 290件, 保險金목적 129件, 절도방화 113件, 염세 105件, 치정 67件, 증거인멸 46件, 욕구불만 21件, 청부放火 6件, 기타 178件이었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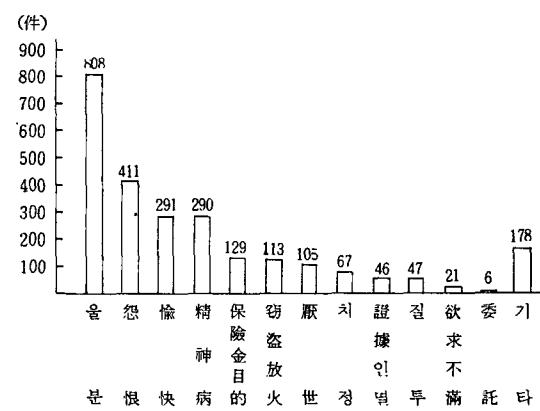
10) Target Arson : Update Newsletter, Committee for Arson Control, Vol.1 Oct, 1980. Chicago

11) 近藤一歲, 放火犯罪, 소방대학교 제5회 화재조사강습회 교재, (소화62년 6월) p.4

또한 대상에 제한없이 무차별로 연속 방화를 10件 이상 한 연속방화범 115名에 대하여 연속방화 건수를 조사한 결과 1人당 放火件數는 평균 19件이고, 가장 많이 放火를 한자는 1人이 81件의 범행을 했다고 한다.¹²⁾

이들에 대한 放火動機는 表3과 같다.

〈表2〉 放火被疑者の 放火 動機



〈資料 : 전계서, p.4.〉

〈表3〉 10件以上 連續放火한 被疑者の 放火 動機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순위
짜	독	인	스	전	생	돈	증	가족	타자	여호	동상	회	동
정	신	연	련	병	활	이	거인	족이	인신	스테	묘사	재	기
코	생	이	을	등의	고로	돈이	멸	다	들은	에스	에	소동	(1인
에	활	줄	맞	통증	부터	없는	다.	돌리고	비	계스	계	이	개
쳤다.	을	줄	보	을	달	돈	없는	따	감한데	에	연계	동	미있다.
옹	을	줄	맞	을	하	폐였	다.	리고	해보	도	동도	기	
원	을	줄	거	있	하	상다.	화	가정	여반	감	감	계	
하는	을	줄	나	어	하	금	풀	생활	한데	하지	하지	미	
아	을	줄	맞	되	하	폐로	이	재	보	진	않고	있다.	
구	을	줄	거	되	하	가	미	미가	가지	진	느	있다.	
팀	을	줄	나	되	하	폐로	없다.	없다.	있	했다.	느	있다.	
이	을	줄	맞	되	하	가	없다.	없다.	있	했다.	느	있다.	
졌다.	을	줄	거	되	하	폐로	가	미가	있	했다.	느	있다.	
	2	4	5	6	7	7	14	17	19	20	28	49	52
													인원

(3) 우리나라

1960년대 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放火火災에 있어 放火犯의 放火動機는 주로 個人的인 원한과 정신이상에 依한 放火였다. 放火對象도 主로 一般

12) 전계서, p.5

住宅이고, 放火犯은 精神이상자나 청소년층이 많았다.

당시의 放火火災의 정도는 1964년 현재 살인 19%, 강도 51%, 절도 44% 등 다른 범죄의 發生趨勢에 比하여 放火는 4%에 불과하여 放火火災에 대하여 그다지 큰 문제 의식은 없었다.

그러나 70年代 이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都市化, 產業化 추세에 따라 핵가족화등 가족제도의 變化, 都市人口의 過密화, 國民經濟活動의 多樣화등 生活環境의 變化 趨勢와 더불어 火災의 樣相에도 많은 變化를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放火火災의 動機도 從前의 比較的單純性에서 複合의 動機를 보이고 있다. 88年中의 火災統計에 依하면 최근 5年間 放火火災의 動機는 家庭不和에 依한 放火가 31.7%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주벽, 싸움, 정신이상, 자살의 순으로 分析되고 있다. 또한 다른 범죄를 犯하고 證據를 인멸하기 위한 放火事例라든지, 政治的, 社會的 動機로 公共施設物에 對한 放火와 都心地住宅街連續放火 및 이를 모방한 放火事例가 急增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放火火災의 動機別 傾向은 싸움에 依한 動機가 84~88(5年간)사이에 161.3%, 家庭不和에 依한 動機가 82.9%, 정신이상성 動機가 5.1.2%(84년도 기준)로 각각 增加한 反面, 자살이 17.3%, 주벽에 依한 動機가 5.7%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表4〉 放火動機 類型別 放火件數 및 構成比

(單位: 件, %)

動機 年度	計	家庭不和	酒 麻	精神異常	싸 움	悲觀自殺	其 他
'84	416 (100.0)	164 (39.4)	87 (20.9)	43 (10.3)	31 (7.5)	75 (18.0)	16 (3.8)
'85	455 (100.0)	110 (24.2)	59 (13.0)	36 (12.3)	104 (22.9)	48 (10.5)	78 (17.1)
'86	555 (100.0)	156 (28.1)	48 (8.6)	48 (8.6)	124 (22.3)	59 (10.6)	120 (21.6)
'87	775 (100.0)	167 (21.5)	44 (5.7)	42 (5.4)	61 (7.9)	84 (10.8)	377 (48.6)
'88 89	945 (100.0)	300 (31.7)	82 (8.7)	65 (6.9)	81 (8.6)	62 (6.6)	355 (37.6)

〈資料：內務部, 火災統計年報, 各 年度〉

2. 放火火災의 發生趨勢

가. 우리나라의 發生趨勢

(1) 強力犯罪 發生對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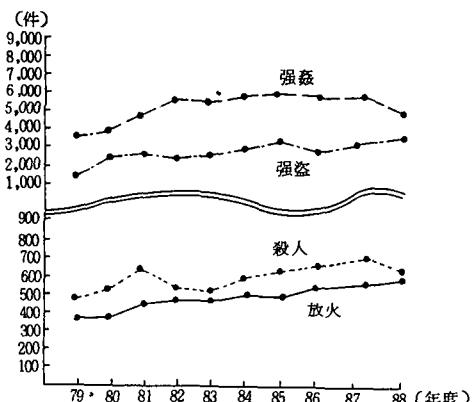
放火犯罪는 檢察廳 統計事務規定이나 檢察規則에 依하여 刑法犯中 살인, 강도, 강간등과 함께 強力犯罪로 分類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선 우리나라의 放火火災 發生趨勢를 다른 強力犯罪의 發生趨勢와 比較해 볼 필요가 있다. '89범죄백서(법무부연수원)에 따르면 1979年度의 強力犯罪 發生指數를 100으로 볼 때 1980년도에는 放火가 372件이 發生하여 指數는 103이었고, 살인 536件 發生에 指數 117, 강도 2,374件 發生에 指數 181, 강간 3,977件 發生에 指數 110이었던 것이 1988年度에는 放火가 593件 發生에 指數 164, 살인 601件 發生에 指數 131, 강도 3,446件 發生에 指數 262, 강간 4,658件 發生에 指數 129로 發生 指數面에서 볼 때 放火事件의 發生이 강도 事件 다음으로 높게 發生하였다.

〈表5〉 強力犯罪의 罪名別 發生現況(1979년~1988년)

罪名 年份	殺 人		強 盜		強 奸		放 火	
	件 數	指 數	件 數	指 數	件 數	指 數	件 數	指 數
1979	45K	100	1,315	100	3,621	100	361	100
1980	546	117	2,374	181	3,977	110	372	103
1981	625	136	2,504	190	4,568	126	428	114
1982	538	117	2,274	173	5,459	151	492	136
1983	518	113	2,498	190	5,244	145	464	129
1984	581	127	2,834	216	5,482	151	504	140
1985	600	131	3,135	238	5,453	151	476	132
1986	617	135	2,695	205	5,002	138	546	151
1987	653	143	3,102	236	5,034	139	553	152
1988	601	131	3,446	262	4,658	129	593	164

〈자료 : '89 범죄백서 p.39〉

〈表6〉 強力犯罪의 罪名別 發生推移(1979~1988년)



〈자료 : 전계서, p.39.〉

또한 다른 犯罪는 發生指數가 年度別로 증감 추세를 보이지만 放火火災는 1980년도 이래 1988년까지 年發生指數가 增加하고 있어 發生增加趨勢를 強하게 나타나고 있다.

(2) 發生趨勢

○ 發生 및 被害率

1980年度부터 1984年度까지의 5年間 平均 發生率은 放火火災는 年平均 15.4%(297件)가 增加하였는데 이것은 全體火災의 年平均 增加率(8.7%)보다 약 2배가 더 높게 發生하는 셈이다.

'88年度 放火는 945件이 發生하여 人命被害가 261名(死亡85, 負傷176)과 1,104백만원의 財產被害가 發生하였다.

이는 全體件數의 7.6%, 人命被害의 16.8%, 財產被害의 3.2%에 해당되는 比率로 發生件數에 비하여 人命被害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表7〉 放火增加 趨勢

區分	年 度	平 均				
		'80	'81	'82	'83	'84
總火災		6,880	5,438	5,851	6,822	7,725
發 件 數 (件)	(%)	(8.7)	(4.7)	(7.6)	(16.6)	(13.2)
放 火		297	219	233	274	344
(%)	(15.4)	(6.8)	(6.4)	(17.6)	(25.5)	(20.9)
建 火 災		1,129	888	999	△ 971	1,457
人 命 被 害 (명)	(%)	(6.4)	(19.1)	(12.5)	(2.9)	(50.1)
放 火		131	111	119	129	170
(%)	(11.0)	(33.7)	(7.2)	(8.4)	(31.8)	(25.9)

〈자료: 87내무부 화재통계연보〉

특히 방화로 인한 소사비율은 全體火災 死亡者의 20.5%를 차지하여 방화로 인한 人命被害의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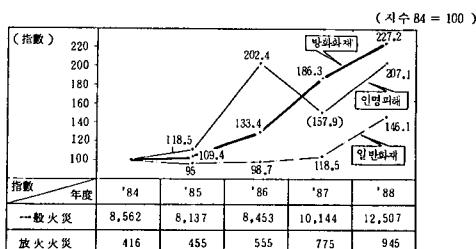
放火火災는 最近 5年間 23.3%의 높은 增加率을 보이고 있고 人命被害 및 財產被害의 增加率도 각각 25.9%, 49.7%씩 增加하였다.

〈表8〉 放火火災分析

區分	年 度	平 均					年 平 均 增 加 率(%)	
		件 數	'84	'85	'86	'87		
人 命 被 害 (死 亡)		629	416	455	555	775	945	23.3
財 產 被 害 (百 萬 원)		198	126	147	255	199	261	25.9
財 產 被 害 (%)		64	40	58	78	58	85	25.1
財 產 被 害 (%)		134	86	89	177	141	176	26.7
財 產 被 害		660	314	318	427	1,136	1,104	49.7

〈자료: 내무부 화재통계연보〉

〈表9〉 放火 火災增加 趨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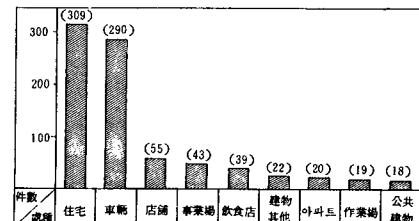


〈자료: '88 내무부 화재통계연보, 1988〉

○ 場所別 發生率

1988年度中에 發生한 945件의 放火火災 가운데 일반주택이(309件 發生) 가장 높은 放火對象目標物이다. 그 다음이 차량(290件), 점포(55), 사업장(43), 음식점(39)의 순이고 공공건물을 放火目標로 한 것이 18件 이었다.

〈表10〉 放火發生 場所別 發生件數('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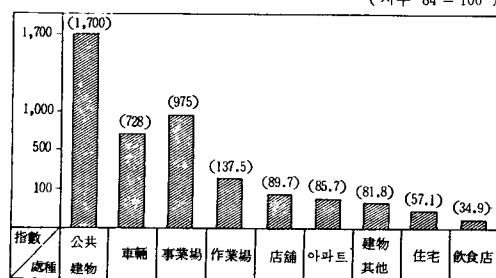


〈자료: 내무부, 화재통계연보, 1988〉

그러므로 放火犯이 目標로 하는 放火對象物中一般住宅은 가장 취약성이 높고 다음이 차량, 점포의 순이다.

또한 場所別 增加指數로는 84년도를 100으로 봤을 때 1988년도중 가장 높은 指數를 나타낸 場所가 公共建物로서 이는 84년도에 비해 무려 17배나 急增한 셈이고 사업장은 指數 975로 그 다음의 순이다.

〈表11〉 急增放火場所



〈자료: 内務部, '88 火災統計年報〉

그러나 以後로는 產業體 放火가 높은 比率을 나타낼 것이다. 그것은 거의 國제적 추세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放火火災는 都市地域에 더 높게 나타나고 都市規模가 클수록 放火火災는 더욱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1988년도 서울시내에 275件(전체의 5.9%), 1989년에는 338件이 發生하여 전체 화재에 대한 放火火災比率은 11.5%에 달하였다.

〈表12〉 서울시의 放火火災 發生 現況

年 度	發 生 件 數	人 名 被 害 者			被 害 額 (千 원)
		死 亡	傷 害	失 業	
'84	全體	3,347	461	102	3,679,737
	放火	117	44	11	33
	比 率	3.5	9.5	10.8	2.8
'85	全體	3,201	369	65	3,479,800
	放火	157	45	13	32
	比 率	4.9	12.2	20.0	3.5
'86	全體	3,190	462	117	2,474,780
	放火	142	75	24	51
	比 率	4.5	16.2	20.5	3.7
'87	全體	3,800	564	88	4,406,333
	放火	168	59	19	40
	比 率	4.4	10.5	21.6	6.0
'88	全體	4,688	474	87	5,164,090
	放火	275	68	26	42
	比 率	5.9	14.3	29.9	4.8
'89	全體	4,500	462	112	4,539,070
	放火	346	78	24	54
	比 率	7.7	16.8	21.4	6.1
'90 (1-7)	全體	2,941	276	61	2,417,701
	放火	338	50	15	35
	比 率	11.5	18.1	24.6	9.1

나. 外國의 放火火災 發生 狀況

(1) 美國의 發生趨勢

放火에 의한 被害財產額을 전체 화재에 의한 피해재산액과 비교하면 1966년에 \$1,528million 중 95million\$가 방화 화재로 인한 피해액으로 이는 전체화재 피해액중 6.19%에 해당하는 것이다.

1970년에는 전체 2,209million 중 206million(9.34%), 1980년에는 5,454million\$ 중 放火火災가 1,760million에 32.2%로 최고로 달했다. 1985년에는 6,437million 中 1,670million로 전체화재피해액의 26.0%를 차지, 방화화재피해액은 감소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NFPA의 자료에 의하면 1951년에는 放火 또는 放火의 의심 있는 火災가 모두 5,600件(\$16million)이던 것이 1978년에는 174,000件(\$1,034million)으로 급증하였다. 1982년과 1983년에는 13%로 감소하였으며 1987년에는 13.4%(피해액중 22.2%에 해당)였다.

1988年度에 發生한 美國全體의 火災는 모두 2,436,500餘件에 達하고 이는 1987年度에 比하여 4.6%가 증가한 셈이다. 放火火災는 全體 건축물 火災 745,000餘件중에서 99,500餘件으로 87年度에 比하여서는 건물화재에서만 5.2% 정도 감소된 추세이다. 그러나 放火로 인한 人命被害面은 死亡이 740名으로 前年度에 比하여 1.4%, 재산피해는 1,594million\$ 상당으로 0.3% 정도 증가하였다.

또한 차량放火는 3.9%가 증가한 53,000件에 달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¹³⁾

〈表13〉 建築物 放火火災 發生 狀況

화재 경 대	발생 건수	전년 대비	비 해 상 황		
			사 망	재산 피해	전년 대비
放 火	63,000 건	- 3.8%	570	\$ 1,022,000 천	- 7.8%
방화 의심	38,500 건	+ 7.6%	170	\$ 572,000 천	+ 18.9%
합	99,500 건	- 5.2%	740	\$ 1,594,000 천	+ 0.3%

〈자료 : Fire Journal Sep. & Oct. 1989, p.27.〉

(2) 日本의 發生趨勢

○ 發生率

○ '87년도 日本의 放火火災發生件數는 4,999件이다.

이것은 전년도에 比하여 3.8%(-195건)가 감소하였다. 放火의 의심이 있는 火災는 모두 3,600件이 發生하여 이것도 前年度에 比하여 10.7%(-432件)가 감소하였다. 放火 또는 放火疑心이 있는 放火性 火災를 合하면 日本의 1987年度 發生件數는 모두 8,599件이고 이것은 全體火災件數對比 14.6%이며 前年에 比하여 6.8% 감소하였다. 그러나 동경소방청관내에서는 총 화재의 30%이상이 放火火災이다.

放火火災로 인한 被害狀況은 放火에 依한 손해

13) Fire Journal, NFPA'S magazine for fire safety professional, Sep. & Oct. 1989, pp.24~27.

액이 73억여엔으로 전년도에比하여 11.6% 증가하였고 放火의 의심있는 火災로 因한 손해액을 합하면 모두 125억여엔으로 前年度에比하여 1.0% 감소했다.¹⁴⁾

日本의 放火火災 發生을 年度別로 보면 1983년에 7,779件, 1984年에 7,688件, 1985年에 8,387件, 1986년에 9,226件, 1987년에 8,599件으로 年度別로 多少 增減 變化를 보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87년에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表14〉 放火火災 發生趨勢(日本)

年度別	發 生 件 數	死 亡 人 數	火 災 件 數	增 減 率		放 火 件 數	放 火 件 數 對 比 率	死 亡 人 數 對 比 率
				計	放 火 件 數 對 比 率			
소회 58								
(1983)	7,779	4,479	3,100			27	↑ 11.8%	— 9%
소회 59						0.6%	△ 3.6%	△ 2.1%
(1984)	7,688	4,506	3,182			4 1.5	↓ 5.5%	↑ 1.2%
소회 60						1.2%	↑ 17.4%	↑ 14.0%
(1985)	8,387	4,651	3,746			4 543	296	9.1%
소회 61						11.7%	7.9%	11.6%
(1986)	9,226	5,194	4,042			↑ 195	↓ 432	10.0%
소회 62						△ 5.8%	△ 10.7%	△ 6.8%
(1987)	8,599	4,999	3,100					

(자료 : 일본 소방백서)

○ 發生 時間帶

日本의 放火火災 發生時間은 주로 20:00~익일 06:00간의 야간에 發生한다. 年度別로 發生件數와 比率을 보면 1984年度에 4,791件(62.3%), 1985年度에 5,455件(65.0%), 1986年度에 5,758件(62.4%), 그리고 1987年度에 5,533件(64.3%)이다.

○ 放火火災에 의한 死亡者(自殺者)

1987年度에 放火에 依한 死亡者는 771名이다. 이는 前年에 比해 33명이 감소했지만 全體화재로 인한 死亡者의 41.5%에 해당한다.

死亡者를 年齡別로 보면 41~50세가 191名으로 全體의 24.8%를 점하여 가장 많은 연령층이고 성별로는 남자 465名, 女子 306名이다.¹⁵⁾

〈表15〉 放火自殺者の 年度別 發生狀況

年 度 別	死 亡 人 數 比 率			
	1984	1985	1986	1987
死 亡 人 數	751	658	804	771
比 率 (全體火災對比)	36%	37.7%	39%	41.5%

(자료 : 소방백서 소회 59~63年版)

(3) 英國

英國 消防協會(The fire protection association)의 分析에 따르면 英國의 放火火災는 1970年代 동안은 急增하였다. 1964년과 1974년간에 放火性火災가 무려 2배나 높았다. 이에 대하여 內務部(Home office)는 特別火災原因調查機構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預防 활동을 강구하고 있다.

영국의 放火火災 發生趨勢를 보면 1963년도에 672件이 發生하였는데 이것은 全體 火災의 2.6%에 해당하는 것이다. 1973년도에는 6,102件이 發生하여 全體 火災件數에 12.2%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였다.

다시 1983년에는 9,800件이 發生하여 全체 火災 發生件數에 25%를 放火火災가 점하게 되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최근에와서 적극적인 預防 활동에 힘입어 다소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大型火災事故에 있어서는 여전히 放火에 依한 火災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형화재 중 放火가 原因인 火災는 1963년도에 發生한 대형화재 579件 중 35件(5.9%)이 放火였다. 그런데 1973년에는 1,439件 중 257件(17.5%)이 放火였다.

그리고 1983년에는 979件 중 403件(41%)이 放火火災였는바 이러한 대형화재 중 50% 정도가 火灾로 인한 화재라고 한다.¹⁶⁾

3. 放火 火災의 特性分析

가. 全體的 傾向

放火火災는 先進國에서 높게 發生하고 農村보다 都市地域에 主로 發生한다.

日本의 경우 1980年度에는 9.6%의 發生率을 보였다. 1987年度에는 14.6%로 增加하고 특히 全 日本의 放火火災 중 34.3%(1985)가 發生하였다.

美國은 全體 火災被害額中 放火火災 被害額構成比에 依하여 1966년에 6.19%에서 1977년에 22.2%, 1985년에 26.0%로 최근 20년간 放火火災가 急增現象을 보이고 있다.

14) 日本消防廳, 소방백서, 소회63년판, p.79

15) 전개서, p.76

16) Fire prevention, Vol.186, Feb

- The arson situation in Europe pp.27~29

또한 英國도 1963년에 672件이 發生하여 全體 火災發生에 比하면 2.6%에 不過하던 것이 1973年에는 6,102件(12.02%), 1983年에는 9,800件(25%)으로 增加하였다.

우리나라도 1960年代에는 3.9%이던 것이 경제성장과 때맞춰 80年代에는 7.6%의 發生率을 보이고 있으며 特히 서울은 전국 放火火災의 30%를 점하고 있다.

放火火災를 失火火災와 比較할 때 先進國에서 그리고 都市地域에서 主로 發生하며 火災로 인한被害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나. 放火 Target와 時間帶

放火犯의 行動 特性에서 볼 때 空家나 창고, 인적이 드문 장소를 Target로 많이 삼고 主로 청소년층이 Vandalism動機가 많다.

(1) 放火의 Target

放火犯이 선호하는 對象은 주로 창고, 빙집, 아파트 현관, 주택 대문으로 비교적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建物이나 車輛 또는 인근 야산이다. 東京 消防廳官內에서 1983년에서 1985년 사이에 放火한 장소를 보면 건물내부와 외벽, 건물의 문, 차량 또는 건물주변의 기타 물건등이다.

건물 용도별로 보면 공동주택(39.8%), 창고(8.2%), 공장, 작업장(6.4%), 기타가 5.7%이고 음식점 5.4%, 차고, 주차장 5.1%의 순이다.¹⁷⁾

유럽지역에서도 放火犯이 선호하는 Target는 비슷한 特性을 보인다.

네델란드에서 放火가 많이 發生하는 장소는 주택(30.8%), 차량(18.4%), 학교(6.9%), 상점(3.8%), 공공건물(3.7%), 병원, 식당(3.0%)의 순이다.

英國에서는 전체화재중 학교(50.2%), 위락시설(41.0%), 공사장(37.2%), 상점(25.6%), 병원(20.0%), 농장(18.5%), 호텔(15.1%)이 放火火災였다.¹⁸⁾

17) 동경소방청, 방화화재예방에 관한 조사 연구보고서 (1987년 3월), p.2

18) Fire prevention, Vol.186, Feb. The arson situation in Europe, p.29.

(2) 放火의 時間別 特性

一般火災의 發生時間은 하루종 특정한 차이가 없다. 대개 一般火災는 주야간에 고르게 발생하지만 放火火災는 주로 야간이며 時間別로 보면 20:00~익일 06:00까지로 일관성 있게 發生하고 있어 發生時間帶의 特性을 보인다.

(3) 放火 Target의 취약 요인

放火 취약대상물은 건물이 비어 있거나 주위의 감시기능이 허술하고 인적이 드문 곳이다. 이런 對象이 있는 特定地域의 동일 장소에(地點)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放火를 한다.

그것은 警備員이 없거나 警備가 허술한 對象은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장소는 은밀히 犯行할 수 있는 곳이다.

또한 放火後 퇴로가 확보된 地域의 建物은 特히 放火의 취약점이 많다.

다. 被害의 深刻性

放火火災로 因한被害는 失火에 依한被害보다 훨씬 심각하다.

최근 5년간 放火火災의 發生 增加率은 23.3%인데 比해 被害面에서는 人命被害가 25.2%, 財產被害가 49.7%이다. 이를 全體 火災와 비교하면 人命被害는 全體 火災에서 6.4% 增加한 반면 放火火災에서는 11.0%로 일반 失火보다 약 2배정도 높은 增加率이다.

88年中 放火件數는 945件에 人命被害 261名(死亡85, 負傷176名)으로 火災1件當 人命被害率은 失火 0.14名에 比해 放火 0.28名으로 放火의 人命被害程度가 2배이상 深刻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死亡被害는 放火1件當 0.09名으로, 失火 火災1件當 0.08名보다 높게 나타나고, 死亡者 構成比로는 全體 火災死亡者の 20.5%를 放火火災가 차지하고 있다.

라. 產業體의 취약성

產業體의 放火犯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放火의動機와는 다르다. 산업체 방화범은 주로 그 산업체와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다. 즉, 현직 및 전직고용인, 경쟁업체, 고객, 사회적, 정치적 특별이익집단, 업체 保安要員, 노동쟁의 기간중의

고용인 또는 外部介入者들이다.¹⁹⁾

(1) 산업체의 放火 취약성

창고나 빙 건물, dock와 platform(트럭, 철도)은 산업체에서 가장 취약한 장소이다. 그러나 사무실이나 판매장은 비교적 덜 취약하다.

창고는 대부분 본부에서 떨어져 있어 경계가 소홀하여 접근이 용이하며, 비어있는 건물은 청소년 Vandal들의接近 용이점이 많고 또한 비어있는 건물은 이들 불량청소년들의 놀이터나 숙식장소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dock시설과 platform시설은 현장에서 유류등 연료(放火用 加速劑)를 구하기 쉬우며 많은 사람이出入하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하고 放火後 도주로가 확보되기 때문이다.

(2) 放火의 方法과 時間

放火犯이 放火를 할때는 보통 2~3곳 또는 여러 곳에다가 거의 동시에 連續的으로 불을 지른다. 첫번째 放火가 失敗하면 2~3주 이내로 다시 放火를 시도한다.

放火時間帶는 一般 放火時間帶와 비슷하다. 보통 근무시간 以外의 夜間에 불을 지르는데 夜間은 自體 警戒가 허술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3) 產業體 放火防止 効果

產業體의 放火를 防止하는데는 fencing(울타리), lighting(방범등), alarm system, 출입문 사건 장치등 施設保護方法과 人的 警戒活動方法이다. 이 두가지를 모두 활용하여 自體警戒에 効果를 기할 수 있다.²⁰⁾

마. 放火犯의 行動特性

美國의 放火犯研究專門家인 Barracato氏는 見解에 依하면 放火犯의 行動特性은 放火犯, 一般放火犯, 청소년放火犯등 放火犯의 類型에 따라 다르다.

(1) 放火犯

放火犯의 경우는 放火目的이 性的滿足을 放火에서 취하기 때문에 放火動機나 理由가 없고 보통 성장과정에서 정서불안이 异狀行動을 유발하게

된다.

선호대상물은 都市地域에서는 주택, 아파트, 상가가 주요 Target이고 시골지역에서는 혀간, 공가, 산등이다.

行動上의 特性은 동일장소, 동일시간대에 연속적으로 放火(20:00~06:00)하고 無計劃的 순간적 충동에 의하여 放火하기 때문에 휘발유등 加速劑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는다. Target의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연물은 무엇이든지 사용하여 放火 한다. 放火犯은 보통 음주상태에서 放火를 하고 연소장소에서 불길을 보고 황홀한 표정을 짓는것 등이 일반적이다.

(2) 一般放火犯

一般放火犯의 경우는 放火 動機나 目的이 뚜렷하다. 즉, 經濟的, 政治的 目的이나 社會的 不滿表示 또는 다른 범죄의 은닉을 위한 目的하에 불을 지른다. 그러므로 이들은 그들의 특정 목적에 맞는 放火對象을 選擇한다. 그리고 그 Target에 對하여 犯行 예비를 하고 인화물질등 加速劑를 미리 準備한다. 스스로 영웅적 역할로 여기며, 放火後 警報를 發하여 주인이나 관리자에게 알린다.

(3) 청소년 방화범(Vandalism)

청소년 放火犯은 特定 目的 없이 不滿表示 또는 교사에 의하여 放火 한다. 문제 청소년등으로 社會的으로 찍힌 낙인에 대한 不滿表示가 放火의 動機일 수도 있다. 이들은 정서가 不安하거나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이 선호하는 Target는 자기집, 자기학교, 인근산, 자동차, 빙집, 주택 등이며 인화물질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²⁰⁾

IV. 放火火災의 問題와 對應方向

1. 放火火災의 問題

가. 放火火災의 急增趨勢

우리나라의 放火火災는 다른 外國과 비슷한

19) Robert E. Carter, Fire Journal. Vol.77-2, 1983. 3
—Industrial Arson— p.53

20) 전개논문, pp.53-55

21) 放火犯의 行動特性에 대하여는 梁成煥, 放火犯의 心理狀態, 火保協, 火災安全 點檢 20권, 1983. 7월호, pp. 48-52에서 인용.

實態를 보이고 있다. 즉, 產業化, 都市化 推進에 따라 火災의 様相도 多樣化 해지면서 放火火災도 動機나 수법이 매우 多樣化 되는 추세에 있다.

統計上으로 볼 때 우리나라와 外國에 比하여 아직은 나은 發生率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外國의 경우는 放火火災를 放火와 放火의 의심 있는 火災를 合하여 放火火災로 統計處理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放火가 明白한 火災만을 放火로 統計를 處理하므로 統計上의 暗數가 매우 높으리라고 본다.

그러므로 放火와 放火 疑心이 있는 火災는 모두 放火火災로 統計處理할 때 우리나라와 英·美國家나 日本의 發生率과 비슷한 趨勢에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統計上 暗數處理되는 放火의 의심이 있는 火災는 犯人檢舉가 소홀해질 여지가 매우 높다.

나. 被害의 심각성

放火火災는 被害가 매우 심각하고 위험하다. 火災로 인한 致死率이 一般火災에 있어서는 火災 1件當 0.14名인데 比하여 放火火災에서는 0.28名으로 2배이상이다.

또한 放火火災는 放火犯이 다른 犯罪를 은닉하거나 殺人目的등으로 放火하는 사례가 점증함에 따라 앞으로는 致死率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放火火災는 또한 行政對象으로는 統制可能性이나 管理可能性의 限界가 있고 危險性에 關한 社會의 認識도 낮은 편이다.

다. 專門研究 및 調查活動 未治

(1) 放火火災豫防 專門研究 活動

우리나라에서는 放火火災에 對應하는 專擔研究機構는 거의 없는 實情이다. 放火火災의豫防을 為한 研究는 管·民間團體를 망라한 專門家의 깊이 있는 研究를 必要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公式的인 專門家의 共同研究活動은 없고 다만 行政機關의 一部에서와 韓國火災保險協會, 한국형사학연구소등에서 部分的으로 研究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므로 根本의이고도 積極的인 放火火災의豫防을 為해서는 專門機構에 依한 綜合的인 共同研究努力이 必要하리라 生覺된다.

(2) 放火火災 專擔調查 活動 未治

放火火災의豫防은 무엇보다도 放火犯의 必檢體制가 가장 效果的이다. 火災現場에서 放·失火여부를 정확히 가려 放火 또는 放火에 의심 있는 火災는 그 犯人이 반드시 체포되어야 한다. 連續放火火災인 경우만 하더라도同一犯의 放火行爲가 여러 件 發生한다.

그러므로 放火犯의 신속한 檢舉는 적어도同一犯에 依한 再犯을 防止하는 特殊的 制止效果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放火犯 檢舉에 搜查機關의 통상적인 인수사활동에 그치고 특수한 경우만 전담반이 편성되어 전담수사를 통하고 있어 放火犯 必檢體制가 未治한 점이 많다.

라. 地域社會 關係未治

行政機關과 地域社會 住民과 公共關係는 主로 弘報手段을 通하여 形成되고 推進된다.

放火火災의豫防을 為한 對應을 效果的으로 達成하기 為하여는 行政과 地域住民의 바람직한 關係가 必要하다. 그러나 放火火災에 對한 認識自體가 낮은 實情이므로 地域社會 關係改善을 為한 問題認識이 안되고 있다.

毎年 11月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定하여 限時的으로 運營하는 弘報 Program만으로는 放火火災豫防을 為한 行政의 地域社會關係를 원활히 維持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2. 放火火災豫防을 為한 對應方向

우리나라의 放火火災豫防策의 바람직한 方向을 모색함에 있어 먼저 外國의 對應策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美國의 放火火災 對應措置

(1) 放火火災豫防 研究活動

美國社會에서는 放火를 일종의 유행병(epidemic)이며 全體 地域社會에 도전하는 폭력(Violence)이라고 규정하였다.²²⁾ 이에 社會共同對應이라는

22) Arson : America's Malignant crime, National fire prevention and Control Administration. Washington, D.C. 1976

社會的合意로 保險社와 다른 團體에서 研究가始作되었으며 特히 여려 市와 州에서 設置한 機動合同研究班(The arson task forces)의 活動을 通하여 全國的으로 放火火災의豫防努力이 試圖되었다.

이와 같은豫防活動에 의하여 1982~1983年間에는 放火貨財가 13%나 감소되었다고 FBI는 밝히고 있다.²³⁾

現在 美國에는 放火問題를 研究하는 여려 專門研究團體가 있는데 그중에서 代表的인 機關團體로는

- National Fire Prevention and Control Administration
 - National Institute of Law Enforcement and Criminal Justice
 - The Law Enforcement Assistance Administration(LEAA)
 -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NFPA)
- 등이 있다.

(2) 放火의 調査體制

放火火災調査에 消防機關, 警察署, 保險會社등이 전국적으로 參與하고 있다. 그런데 이 中에서 搜查를 하며, 司法的執行(Law Enforcement)機關은 消防인지 경찰인지 또는 Public分野와 Private分野의 法執行 限界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一般的으로 Law Enforcement는 消防과 警察이 合同으로 行하는데 放火火災調査에는 보통 다음의 3가지 基本的인 接近方法이 있다. 그것은 ① 소방서의 책임형식, ② 경찰서의 책임형식, ③ 공동책임형식 등이다. 共同責任形式은 가장 효과적인 方法으로 공동참여기관의 조정과 통제를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Indianapolis에서는 地域社會共同參與形式을 取하고 放火火災調査委員會를 設置運營하고 있다. 이 共同委員會의 長點은 調査委員, 장비, 훈련시설을 共同 利用할 수 있어 가장 적은 투자로 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고 調査에서 조정과 統制가 充分하여 매우 效果的이라 할 수

23) Fire prevention, Vol.186, Feb
- The arson situation in Europe. p.27

있다.

共同委員會에 參與하는 機關은 市, 경찰, 소방, 檢찰, 기타 公安機關이다.

委員會의 活動事項으로는 1次目標가 放火犯檢舉, 起訴를 為한 證據 確保이고 2次目標는 火災被害, 火災原因, 發火源의 調査이다.

委員會의 指揮, 報告統制는 警察, 消防으로 二元化되어 있는 問題가 있으나 경찰, 소방 각各 1名이 상의 Team 요원이 活動하기 때문에 運營上 문제는 없다.²⁴⁾

〈表16〉 Fire Fighter, Police Comparison

	Police expectations	Fire fighter expectations
Violence	1. Personal 2. Physical 3. Violent	1. Nonpersonal 2. Usually related to Injury by fire, smoke or chemical
Team concept-working	1. Usually works in car alone 2. Thinks for himself in singular situations 3. Open movement	1. Usually with team 2. Thinks in team mode by necessity 3. Confinement of quarters and movement
Leadership/supervision	1. Called for only when a necessity 2. Supervisor is a separate entity	1. Usually one supervisor present at all times, closely supervised 2. Supervisor is a part of the working team
Expectations	1. Enforce the law justly 2. On occasion take freedom from law violators 3. Arrest and protect/mediate	1. To help—never to be seen as the oppressor or enforcer 2. Usually no mediation because of the nature of lighting fires
Equipment and training	1. Baton, firearms, handcuffs 2. Uniforms and badges of authority 3. Police cars signify help or trouble	Defensive 1. Seen by general public as protectors, lifesavers 2. Uniform 3. Fire truck means help is on the way Offensive 4. Both register excitement

〈자료 : Fire Command. Aug. 1986.〉

나. Europe國家

(1) 프랑스

프랑스는 放火火災는 對應活動을 為하여 200여개의 保險關係會社(APSAIRD)가 合同으로 研究對處하고 있다.

APSAIRD의 기능은 放火 및 放火疑心 있는 火災의 調査를 支援하고, 火災調查官을 선발하여, 調査報告書의 分析·弘報活動을 하는 것이다.

放火火災 專門研究調查機構로는 中央에 消防, 전직 고위 경찰관, 전문기술인, 기타 전문가로構成된 放火火災調查委員會가 地方에는 40餘名의 專擔調查官이 있는데 이들은 主로 前職 警察官中

24) Fire Command. Vol.53-8, August 1986. pp.26~57

에서 選拔된 사람들이다.

주요 活動으로는 ○放火關聯情報集中管理 ○保險사취基準設定 ○精密放火調查鑑識方法開發 ○專門家交流 ○情報 資料등이다.²⁵⁾

(2) 스웨덴

스웨덴은 1976년에 처음으로 경찰, 소방, 사회봉사단체, 보험회사, 심리학자, 정신과의사, 시설주(Property Owners)등으로 共同構成된 “Local Action Group Against Arson”를 설립하고 放火火災에 對應하고 있다.

○ Group의 산하에 전국에 10個 對策班이 있으며, 주요활동은 定期總會, 放火問題討論, 放火豫防策支援, 火災鑑識調查(消防·警察合同), 合同教育施設, 火災調査,豫防業務遂行등이다.²⁶⁾

다. 日本의 放火火災豫防對策

日本은 1986. 6. 23, 東京消防廳에 放火火災豫防對策委員會를 設置하였다.

일본의 放火火災對策委員會의 구성, 기능 및 조사 연구분야는 다음과 같다.

- 委員會構成: 消防, 警察, 精神科醫師, 心理學者, 建築工學專門家등
- 機能: 放火火災防止對策 및 關聯施策檢討, 消防廳에 報告 每月 1回會議開催, 放火弘報活動
- 調查研究分野: ① 都市計劃·建築環境面, ② 自主防火組織·防火管理組織面, ③ 法制·行政面, ④ 社會心理·青少年教育面

라. 우리나라의 對應方向

放火火災를 根本的으로豫防하기 為하여는 特定行政機關만의 努力으로는 限界가 있다.

向後 우리나라의 放火火災豫防對應活動의 方向으로는 法的 行政的側面, 社會環境的側面, 社會統制的側面등 分野別로 綜合的 研究活動으로 對應해야 할 것이다.

(1) 法的 行政的 側面

○ 法的의 側面

25) Fire Prevention, Vol.190, 1986 June
—Arson in France

26) Fire prevention, No.188, 1986. 4, pp.28-30

火災豫防에 關한 立法的 事項은 現在 消防法에서 規定하고 있다. 消防法에서 定하고 있는 火災豫防은 消防對象物이라고 하는 對物的 豫防條項이다.

放火火災는 一般火災(失火)와는 달리 行爲者的 意思에 따른 人爲的原因에 起因한 것으로 對人的 犯罪豫防을 為한 別途의 法的 裝置가 있어야 한다. 現在 警察官職務執行法(제6조)을 補完하여 放火犯罪의豫防的活動을 具體化하는 것도 한가지 方法일 수 있다.

○ 行政的 側面

檢査, 警察, 消防等 公安 行政機關은 서로 긴밀히 協調하여 放火火災豫防을 為한 對人的, 對物的 豫防措置를 効率的으로 推進할 수 있는 行政體制가 維持되어야 한다.

行政協調體制의 効果를 期하기 為하여는 外國의 制度에서 처럼 “放火火災豫防推進委員會” 같은 委員會 또는 專門研究活動이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 地域社會關係 改善

放火火災豫防을 為한 對人的, 對物的 豫防措置의 必要性이라든가 專門研究機構에서 研究한 결과를 地域社會住民이 理解하고 自律參與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放火火災를豫防하기 為한 活動은 行政機關等과 地域社會住民間의 關係가 바람직한 狀態이어야 効率性을 높일 수 있다.

行政機關과 地域社會住民과의 關係를 改善하는데는 住民自願·奉仕團體나 自生的 Group등과 接觸하거나 特別한 弘報技法을 活用하는 方案이 効果의이다.

○ 產業體等 自衛防火管理體制

產業體는 特히 放火火災의 취약성이 높기 때문에 業體 스스로自己施設을 防護할 必要가 있다.

產業施設의 防護手段으로는 Fencing, 防犯燈設치, 경보시설, 창고등 放火 Target가 될 시설물의 시건장치등 施設面에서의 防護手段을 強化하여야 한다. 또한 出入者統制, 수상한 出入者の 휴대품 조사, 施設物의 點檢, 巡察등 人的 경계활동을 強化하는 體制가 推進되어야 한다.

產業體 自衛防護에는 保安要員(Security Pers-

onnel) 的 높은 士氣가 維持되어야 하므로 施設主는 賢備員이나 施設物安全管理要員등의 士氣管理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關係行政機關에서도 產業體 保安要員의 任務遂行에 積極協調하여 그들의 活動에 身分的保護를 해 주어야 한다.

(2) 社會環境的 對應

放火火災의 動機에는 消費生活이 高度化된 都市生活環境, 家庭環境, 社會生活의 倫理道德觀의 變化等 社會的, 家庭的 環境이 크게 作用한다.

放火火災의豫防에는 이와 같은 社會環境을 考慮한 對應이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青少年放火火災를豫防하기 위한 青少年 善導 program은 學校나 地域社會家庭에서 확대 運用되어야 한다. 청소년 相談員으로 學校教師나 精神科醫師의 役割도 매우 重要하다.

地域社會行政機關은 教師나 學父母, 精神科醫師등과 긴밀히 協調하여 青少年 善導 Program의 効率的인 運營에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社會의 有害環境을 정화하고 건전한 倫理, 道德觀을 回復할 수 있도록 國民精神運動Program의 運營이 効率的으로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放火火災豫防을 為한 社會環境的 對應은 法的, 行政的 側面에서 본 地域社會關係改善과 함께 推進되어야 할 性質의 것이다.

(3) 社會統制的 對應

放火火災의豫防은 社會統制論의 制止機能이 直接的인 効果를 期할 수 있다.

放火犯의 檢舉와 處罰에는 신속성과 嚴格性, 實確性이 維持되어야 한다.

放火犯은 必檢하고, 處罰은 嚴格하고 確實해야 社會統制에 있어一般的 制止效果의 特殊的 制止效果를 거둘수 있다.

放火犯의 必檢에서 오는 特殊的 制止效果를 거두기 為해서는 現行 搜查體制로는 未洽하다.

미국 Indiana Police에 처럼 專擔調查 team의 運營은 바람직할 것이다.

專擔調查team은 地域社會單位로 경찰관과 消防專門要員으로 合同構成하고 搜查主管機關의 長이 이들의 調查活動을 統合, 調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되면 火災現場調查에서 火災原因이 放火냐, 失火이냐를 區分하여 搜查의 단서를 얻기 쉽고, 放火犯이나 放火疑心이 있는 火災를 끝까지 추적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犯人을 체포하는데 매우 效果的일 수 있다.

V. 結論

지금까지 放火火災의 實態를 分析하고 外國의 對應策에 對하여 살펴보았다.

放火火災의 實態에서 볼때 ① 放火火災는 先進國型 犯罪에 依한 火災이며 특히 都市地域에서 높게 發生한다는 것 ② 放火火災는 그被害가 매우 深刻하고 地域社會의 公共安全을 크게 위협한다는 것 ③ 特히 產業體 放火는 自體 취약성이 높고 檢舉가 어렵다는 것 ④ 그리고 放火犯이選好하는 放火 Target나 放火時間帶, 放火手法에 一貫性이 있다는 것 등의 特性이 있다.

放火火災 關聯理論의 背景과 이런 特性을 비교해 보면 放火火災가 先進國型 및 都市型 犯罪인점에서는 Bugges의 同心圓理論과 대체로 一致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放火火災가 增加趨勢에 있고 그被害도 심각하며 自殺의 手段으로 삼고 있는 點은 Durkheim의 Anomie의 自殺論이나 Merton의 社會的 anomie의 理論과一般的으로 一致하는 것 같다.

특히 產業體의 放火에서는 Merton의 理論에서 anomie에 적응하는 方式 가운데 혁신형이나 반역형의 적응방식을 택하는 사람들이 放火를 한다고 볼 수 있다.

放火火災의 對策으로 美國은豫防活動을 為한 專門研究活動을 대부분의 市나 州에서 關聯機關合同의 「arson taskforces」를 운영하는 외 중앙정부 단위의 여러 연구기구를 설치 운영하여 효과적으로 對應하고 있다. 美國以外의 불란서나 스웨덴도 放火火災豫防研究專擔機構를 運營하여 매우 效果를 보고 있으며 日本도 이와 같은 對應方向으로 研究하고 있다.

結論은 放火火災는 犯罪中에 強力犯罪에 依한

火災이며 그 모방성이 강하여 마치 전염병과도 같은 폭력으로 社會安定을 크게 해친다.

이에 적절하고도 효과적으로 對應하는 것이 社會安定維持에 기여하리라 생각하고 우리나라도 外國에서처럼 豫防對策을 實用性있게 運營하도록 政策의인 考慮가 要望된다.

參 考 文 獻

慎鎮揆, 犯罪學兼 刑事政策, 法文社
정영석, 刑事政策(全訂版), 法文社
張相姬外 1人共譯, 逸脫의 社會學(Liska), 經文社
金璟東外 1人, 社會調查方法論, 博英社
內務部, 火災統計年報, 1988
지방행정공제회, “地方行政” 1990. 5. 7월호
法務部研修院 犯罪白書, 1989.
NFPA, Fire Command, 1986, Agu

NFPA, Management in the fire service
NFPA, fire Journal, 1989, Sep/Oct
Percy Bugbee, Principles of fire protection
Charles W. Bahme, fire service and the Law
Donna L. Rosenbauer, introduction to fire protection
George B. Vold, Theoretical criminology
ALVINW. COHN, police Community Relation
August Beguai, Organized Crime
SANDIEK G. BENNET, Law Enforcement and criminal Justice
EARL RUBINGTON, Deveance The interactionist perspective
東京消防廳, 消防白書, 소화60~63, 대장성인쇄국
東京消防廳, 消防ハンドブック '87
深澤賢, 警備保障のすべて
鈴木廣, 都市化の 社會學
山根清道, 犯罪心理學